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1994호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

법무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법무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장

I 인원 및 시험일정 등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방법

구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선발인원	시험방법
경력경쟁 채용시험	법무	소방경	1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시험일정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0. 7. 27.(월) ~ 30.(목) 18:00 ※ 취소 : 7. 27.(월) ~ 8. 3.(월)		
신체검사	8. 6.(목)	8. 13.(목) ~ 14.(금)	9. 2.(수)
인·적성검사 (서류전형 포함)		8. 20.(목)	
면접시험	9. 2.(수)	9. 9.(수)	9. 15.(화)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및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II 응시자격

□ 응시자격 기준일

구분	기준일(보유 등)
응시 결격사유 등	최종시험예정일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예정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결정을 취소함	

□ 응시 결격사유 ※ 【붙임 1】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경력경력채용등의 요건 등)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응시연령

채용구분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1997.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조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 없음

□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등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다만, 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가능
- 자격 및 경력

-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에 합격한 자
- ▶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5

Ⅲ 시험방법

□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서류전형 포함)

- 신체검사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붙임3) 중 택일하여 개인별 실시

<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3】에 의함 ※ 붙임 3 참조

-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과 2단계(개별면접)으로 구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인성 및 직무검사, 결격사유조치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합격자 결정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 합격자 발표 : 2020. 9. 15.(목)

IV 원서접수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로 직접 접속하여,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7. 27.(월) 09:00 ~ 30.(목) 18:00 / 기간 중 24시간
※ 취소기간 : 2020. 7. 27.(월) ~ 8. 3.(월)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결제비용 등)이 소요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수험생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단계별 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가로)×4.5cm(세로)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응시표는 신체검사 장소 공고일(8. 6.) 이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V 응시자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험감독관 지시 불응·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및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단계별로 **별도 안내하는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불가)**, 해당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시·장소·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이상자**의 경우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연락처 : 051-760-3023

- 【붙임】**
1. 소방공무원 응시결격사유 1부.
 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3.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현황 1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사유 해당자 포함)은 응시 가능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등록의무자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구분	내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 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3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02053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건강검진센터	1577-0075	07061	
3	국립경찰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05715	
4	구포성심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 (구포동)	051-330-3996	46581	
5	대동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051-550-9300	47737	
6	동래보생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051-520-5537	47889	
7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49201	
8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47527	
9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49241	
10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051-933-7672	48575	
11	영도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57	49036	
12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96 (온천동)	051-590-3384	47821	
13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48265	
14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051-330-3026	46555	
15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051-602-8137	48094	
16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목기념보생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051-664-4054	48775	
17	재단법인한호기독교사회교회 일신기독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좌천동)	051-630-0421	48724	
18	학교법인 춘해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051-608-0271	47352	
19	학교법인)동의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47227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46996	
21	해동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051-410-6700	49035	
22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 2가)	053-200-5791	41944	
2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053-258-4171	42601	
2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듀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053-650-3434	42472	
25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053-560-7387	41845	
26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053-940-7025	41199	
27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053-620-3180	42415	
28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22532	
29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62284	
30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검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6~7	35015	
31	대청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서부 계백로 1322 (정림동)	042-589-6553~4	35403	
32	동강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114	44455	
33	중앙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80번길 10 (신정동)	052-226-1100	44667	
34	아주대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 2번선택	16499	
35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16494	
36	의정부백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031-843-8383	11778	
37	강릉아산병원	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25440	
38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313	24289	
39	삼척의료원	강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 (남양동)	033-570-7418	25920	
40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033-741-1670~2	26426	
41	청주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043-279-0114, 2번선택	28547	
42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삼룡동)	041-570-7200	31071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비고
4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녕로 77 (웅진동)	041-962-1111	32535	
4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양로 149 (석림동)	041-689-7000	32001	
4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32232	
46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54907	본관 지하1층 건강관리과
47	예수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사동)	063-230-1515	54987	본관 2층 건강의학센터
48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원로 390 (우아동)	063-250-8770	54910	제3병원(응급실) 7층
49	익산병원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063-840-9120	54543	신관2층 건강증진센터
50	동군산병원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063-440-0370	54033	신관2층 건강증진센터
51	정읍아산병원	전북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063-530-6140	56153	2층 건강진단센터
52	남원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152	55726	1층 건강증진센터
53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00	58701	
54	나주종합병원	전남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061-330-6114	58251	
55	성가톨릭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57931	
56	여천전남병원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061-690-6000	59641	
57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000	36694	
58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114	39371	
59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75-0005	37816	
60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32-8901	39579	
61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055-733-0000	53290	
62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 (두모동)	055-680-8114	53317	
63	의료법인 성념의료재단맑은샘병원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055-731-1240	53209	
64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10-6000	50971	
65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0	50960	
66	강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강일병원)	055-822-0100	50905	
67	의료법인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30-0300	50880	
68	베데스다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055-384-9901	50576	
69	웅상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59 (명동)	1600-7582	50536	
7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000	50612	
71	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055-750-7123	52709	
72	진주고려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철암동, 진주고려병원)	055-751-2500	52726	
73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055-759-7777	52818	지하1, 지상 1~5,7층
74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철암동)	055-750-8000	52727	
75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2	51394	
76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2050	51472	
77	한마음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055-268-7898	51497	
78	삼성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6012	51353	
79	에스엠지연세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240-7542	51740	
80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41	51264	
81	연세에스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055-548-7794	51659	
82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59	63127	
83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2	63109	
84	한마음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064-750-9000	63227	
8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580	63241	
86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064-730-3000	63585	
87	한국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701	63183	